

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6. 6. 23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6월 7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2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6월 22일

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)

가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 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대형폐기물로 배출되는 가구류 및 가전제품이 매년 증가되므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1985년에 경량철골조로 건축되어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재활용시설 규모를 신축(증축)함으로써 시설개선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.
 - 위 치 : 영등포구 당산동3가 407외 11필지
 - 소 유 자 : 국가(재경부)
 - 대지면적 : 756.7㎡ (229.3평)
 - . 재활용센터 부지 405.2㎡, 경로당 부지 351.5㎡
 - 소요예산 : 1,873백만원

3. 專 門 委 員 的 檢 討 報 告 要 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13조의2에 “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·운영”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안의 부지매입 목적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,

- 또한, 현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1관은 1985년에 건립된 경량철골조 건물로서 노후도가 심하고 협소하여 매년 20% 이상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 대상물품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, 우리구의 원만한 청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계획안과 같이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시의에 맞고 적절하다고 사료됨.
- 매입 계획안을 살펴보면 제안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총 부지 매입액 1,873백만원을 5년 연부로 납부하며, 2006추경에는 188백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
- 그러나 2006.5.31 동 부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1,785백만원으로 당초 계획수립 시의 공시지가 1,441백만원보다 344백만원 상승하였으며, 이에 매입가격의 산정은 통상 공시가격의 130%로 계상하므로, 실제 계약할 수 있는 추정가격은 2,321백만원이 될 것이며,
- 5년 연부로 계약할 경우 2006년 추경에 확보할 예산은 10%인 232백만원으로 추정되며,
- 건물의 신축은 동 부지에 연면적 450㎡(136평)의 3층 건물 1동이며, 추정 건축비 5억원 중 2억 5천만원은 우리구 2006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, 2억 5천만원은 2006.4.10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있음.
- 본 계획안이 의결될 경우 서울시로부터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2006.5.29 우리구에 통보된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면,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제2항의 국유지 매각기준인 “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만을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” 하고 있으므로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어 불승인하였는 바,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.

4. 審査結果：原案可決